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 1 차 정 보 위 원 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권한 관련 법률상 근거 마련〉

■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41호)

2025. 9.

정 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0
1. 역대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촉 현황	10
2. 대테러 인권보호관 업무 실적	11
3. 인권보호관 관련 입법례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인영 · 박상혁 · 이정문 · 한정애 · 강준현 · 전진숙
김영진 · 백승아 · 이연희 · 장철민 · 김성희 의원(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5.
3. 회부연월일 : 2024. 1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실효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상향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있는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현행법¹⁾ 제7조제1항은 관계기관²⁾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함)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³⁾에서 인권보호관의 자격 및 임기(제7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현행법령(법 제2조제7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계기관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공업용수도사업·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임.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 및 임기)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인권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인권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인권보호관의 직무 등) ①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2.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3.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② 인권보호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

조), 직무(제8조), 시정권고(제9조), 비밀의 엄수(제10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인권보호관의 직무 및 시정권고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하는 한편, 직무수행 또는 시정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안 제7조제5항)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생략) <u><신 설></u>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현행과 같음) <u>②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u> <u>1.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u>

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인권보호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대책위원회는 인권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정 권고) ① 인권보호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중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인권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의 엄수) ① 인권보호관은 재직 중 및 퇴직 후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자문 및 개선 권고 2. <u>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u> 3.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③ <u>인권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중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u>
<u><신 설></u>	④ <u>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인권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⑤ <u>인권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② (생략)	⑥ (현행 제2항과 같음)

인권보호관은 현행법령에 따라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 자문·개선권고,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관계기관 대상 인권교육 및 시정 권고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대테러활동은 테러 관련 정보 수집, 테러위험인물 관리, 테러 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고⁴⁾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추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⁵⁾ 이와 관련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가 필요하나, 현행 인권보호관의 대테러 정책·활동 관련 시의성 있는 정보 접근 및 실질적 통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⁶⁾.

최근 인권보호관 활동 실적을 보면, 인권침해 관련 민원 처리 및 시

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은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송석윤,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연구용역 보고서』, 국무조정실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8. 및 홍영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관련 외국의 법제도 연구』, 국무조정실 연구용역결과보고서, 2023.

정 권고 실적은 없고, 안전 관련 자문·개선권고 11회, 인권교육 76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밖에 전문가 간담회를 포함한 정책연구, 대테러 업무 주요직위자 예방 및 국외 교류 등을 수행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상세 내역은 <참고자료 2> 대테러 인권보호관 업무 실적 참조).

<인권보호관 업무 실적>

구분	2021	2022	2023	2024	계
자문 및 개선권고	4	3	0	4	11
민원 처리	0	0	0	0	0
인권교육	18	28	14	16	76
시정 권고	0	0	0	0	0

자료: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제출 자료 재구성

개정안은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시정 권고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인권보호관의 관계기관 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신설하여 테러활동에 의한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감독·통제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입법례를 살펴보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군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의 설치, 군부대 방문조사 근거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의 경우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북한이탈주민 임시보호시설의 인권보호관 위촉 및 보호외국인 인권보호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참고자료 3> 인권보호관 관련 입법례 참조).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취지 및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인권보호관의 직무, 시정권고 권한 및 자료제출 요청 권한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다만 국가정보원 및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해당 의견을 고려하여 인권보호관 직무 수행의 효과성 제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정보원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다만 인권보호관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비상임 위촉직)으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해촉 외에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어서 인권보호관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법 시행령 제10조를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⁷⁾.

관련하여 입법례를 살펴보면 비밀유지 의무 규정을 두면서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거나(「국가인권위원회법」 제52조 및 제59조⁸⁾),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는 예가 있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의2⁹⁾ 등)을 참고할 수 있음.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은 개정안에 동의하며, ㉠ 인권보호관 직무에 인권보호정책의 수립·시행 및 인권침해 방지·구제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추가하여 정책 입안 시부터 대테러 정책과 인권보호정책이 유기적으로 고려되도록 하는 방안,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외에 방문 조사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기관 장이 성실히 협조하도록 명시하는 방안, ㉢ 비상임 인권보호관 1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시행령상 행정·재정·인력 지원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방안 등 강화된 입법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임¹⁰⁾.

7) 국가정보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국정원 의견」, 2024.12.

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비밀누설)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0)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테러방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24.12.

문 의 처
02) 6788-5614

※ 참고자료

1. 역대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촉 현황

구분	성명	주요 경력
1대 (’16.7.21.~’18.7.20.)	이효원	·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외부위원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대 (’18.9.3.~’20.9.2.)	김덕현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현 변호사
3대 (’20.10.7.~’22.10.6.)	오재창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현 변호사
4대 (’22.10.12.~’24.10.11.)	차진아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민간위원 · 서울시립대 법정대학 법학부 조교수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대 (’25.2.4.~현재)	김희균	· 미국 뉴욕주 변호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법무부 검사인사위원회 위원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료: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2. 대테러 인권보호관 업무 실적

□ 자문 및 개선권고

연번	연도	안전명	검토의견 요약
1	2021	2021년 하반기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	증오범죄 증가 우려, 차별적 인식 개선 등 인권 증진에 기초한 대테러 전략 강화 필요
2	2021	2021년 하반기 국가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관계기관 통합 대테러 교육 및 세미나 시 대테러 인권교육 포함 검토 필요
3	2021	생물테러감염병원체 관리 강화 추진	개인정보 확보 등을 위한 법령 정비 시, 기본권 제한 최소화 및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령 입안 필요
4	2021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류 등 테러물품 차단 대책	관계기관의 관련 정보 관리·기관 간 공유 시 ① 정보 수집 범위 제한, ② 보존기한 경과 시 폐기, ③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준수 필요
5	2022	2022년 국가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 신기술활용 테러 대비 연구용역 추진 관련 민감 정보 활용 시 기본권 제한 최소화 방안도 포함할 필요 · 대테러활동 관련 법 개정 및 매뉴얼 보완 시 기본권 제한 관련 사항은 인권보호관과 사전협의 필요 · 대테러조사 시 대상 범위 명확화 필요 ·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 교육훈련 시 대테러 인권 교육 포함 필요
6	2022	2022년 하반기 국가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통합 대테러 교육 세미나 관련 대테러인권보호관 주관, 대테러 업무 담당자 대상 대테러 인권교육 포함 요청
7	2022	「관세국경안보팀」 신설 등을 통한 테러위험물품 차단 강화	행정조사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8	2024	인권보호관 역할 강화 관련 의견	헌법상 자유권 침해 가능성 있는 대테러활동 전반에 대해 인권보호관에 적시 정보 공유 필요
9	2024	국내외 테러정세 및 테러위협 선제 대응 계획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예방 점검 활동 시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

연번	연도	안전명	검토의견 요약
10	2024	테러대상시설·이용수단 안전관리 강화	테러대상시설 지정 기준 개선 시 수인의무와 영업의 자유 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11	2024	파리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추진	국외 경찰 파견, 관계기관의 부처 내 상황실 설치 관련 재외국민의 인권 및 기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인권보호관과 적시 정보 공유 필요

주: 안전명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안전명을 말함.

자료: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 민원처리

- 인권침해 관련 민원은 접수된 바 없음.

□ 인권교육

연번	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1	2021.3.31.	한국중부발전	시설·방호 담당자 인권교육
2	2021.4.23.	국가정보원	본원 직원 인권교육
3	2021.5.17.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직원 인권교육
4	2021.6.4.	관세청	대테러요원 전문요원 정기교육
5	2021.6.8.	인천광역시청	시설·방호 담당자 인권교육
6	2021.6.29.	한국공항공사	시설·방호 담당자 인권교육
7	2021.7.23.	한국석유공사	시설·방호 담당자 인권교육
8	2021.8.24.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안보과정 인권교육
9	2021.9.1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인권교육
10	2021.9.30.	한국전력공사 등	시설·방호 담당자 인권교육
11	2021.10.5.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 인권교육
12	2021.10.26.	관세청	대테러요원 전문요원 정기교육
13	2021.11.2.	국립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인권교육
14	2021.11.11.	대전경찰청	경찰특공대 부대원 인권교육

15	2021.11.16.	한국서부발전	시설·방호 담당자 인권교육
16	2021.11.19.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직원 인권교육
17	2021.11.26.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테러 업무담당자 인권교육
18	2021.12.7.	국가정보원	본원 직원 인권교육
19	2022.2.8.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직원 인권교육
20	2022.2.24.	국립재난안전원	시설·방호 담당자 인권교육
21	2022.3.14.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주요 직위자 대상 인권교육
22	2022.3.16.	경상북도청	시설·방호 담당자 인권교육
23	2022.3.16.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시설·방호 담당자 인권교육
24	2022.3.17.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 시설·방호 담당자 인권교육
25	2022.3.24.	세종연구소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인권교육
26	2022.3.29.	국가정보원	본원 직원교육
27	2022.4.5.	행정안전부	시설·방호 담당자 인권교육
28	2022.5.3.	한국중부발전	시설·방호 담당자 인권교육
29	2022.5.12.	국가정보원	대전지부 직원 인권교육
30	2022.5.17.	대전교통공사	시설·방호 담당자 인권교육
31	2022.5.17.	대전광역시청	시설·방호 담당자 인권교육
32	2022.5.17.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시설·방호 담당자 인권교육
33	2022.6.10.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 인권교육
34	2022.6.13.	국립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인권교육
35	2022.6.23.	한국공항공사	시설·방호 담당자 인권교육
36	2022.6.23.	의왕ICD	시설·방호 담당자 인권교육
37	2022.6.23.	인천대교(주)	시설·방호 담당자 인권교육
38	2022.9.5.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직원 인권교육
39	2022.9.15.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직원 인권교육
40	2022.10.19.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직원 인권교육
41	2022.11.10.	관세청	대테러요원 전문요원 정기교육
42	2022.11.15.	한국석유공사	시설·방호 담당자 인권교육
43	2022.11.15.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시설·방호 담당자 인권교육
44	2022.11.17.	인천경찰청	제4기동대 부대원 인권교육
45	2022.11.18.	인천경찰청	제5기동대 부대원 인권교육
46	2022.11.24.	국가정보원	본원 직원 인권교육
47	2023.3.6.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인권교육
48	2023.3.7.	국방부방첩사령부	대테러 업무담당자 인권교육
49	2023.3.16.	세종경찰청	경찰특공대 부대원 인권교육

50	2023.3.21.~23.	인천경찰청	제3·4·5기동대 부대원 인권교육
51	2023.3.23.	인천경찰청	경찰특공대 부대원 인권교육
52	2023.3.30.	대구경찰청	경찰특공대 부대원 인권교육
53	2023.3.30.	대구제2작전사령부	대테러 업무담당자 인권교육
54	2023.4.3.	관세청	대테러요원 전문요원 정기교육
55	2023.4.7.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 인권교육
56	2023.4.12.	대전경찰청	경찰특공대 부대원 인권교육
57	2023.4.17.	전북경찰청	경찰특공대 부대원 인권교육
58	2023.4.21.	국가정보원	연수원 입소자 인권교육
59	2023.6.23.	국립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인권교육
60	2023.10.20.	국가정보원	본원 직원 인권교육
61	2024.3.22.	해군 군사경찰단	군사경찰단원 인권교육
62	2024.4.15.	대구경찰청	경찰특공대 부대원 인권교육
63	2024.4.17.	대전경찰청	대테러계 직무교육
64	2024.4.18.	한국철도공사	대테러 담당자 직무교육
65	2024.5.1.	경기북부경찰청	경찰특공대 부대원 인권교육
66	2024.5.2.	육군 군사경찰단	군사경찰단원 인권교육
67	2024.5.10.	국가정보원	대테러 담당자 인권교육
68	2024.5.30.	한국가스공사	시설·방호 담당자 인권교육
69	2024.6.11.	국립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인권교육
70	2024.7.22.	충남경찰청	경찰특공대 부대원 인권교육
71	2024.7.24.	세종경찰청	경찰특공대 부대원 인권교육
72	2024.10.15.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방호 담당자 인권교육
73	2024.10.28.	경북경찰청	경찰특공대 부대원 인권교육
74	2024.10.30.	육군 203여단	신규 대테러 전담 부대 인권교육
75	2024.11.14.	대전교통공사	시설·방호 담당자 인권교육
76	2024.11.27.	대구교통공사	시설·방호 담당자 인권교육

자료: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 시정권고

○ 해당사항 없음.

3. 인권보호관 관련 입법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군인권보호관)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6조(사무처)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는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둔다.

②~ ④ (생략)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사) ①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군인권보호관 또는 위원이 직접 방문조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등은 그 이유가 소명된 때에는 즉시 방문조사를 중단하되,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방문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조사를 받는 군부대의 장은 즉시 방문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군부대 소속의 직원 및 군인등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절차, 통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비밀누설)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2조의5(인권보호관) ①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보호시설에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 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 인권 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지원
3. 그 밖에 임시보호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등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보호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

제28조의2(인권보호관의 지정)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권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 신고의 접수 및 조사
2.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3. 인권보호 실태의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4. 그 밖에 청장등이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의3(인권침해 신고 등) ①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보호관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청장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신고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③ 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의8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절차 안내
2.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

⑤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